

국회

1. 구성

가. 국회의원

선출 방식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역대표 : 국민이 직접 선출(지역구 의원, 소선거구제) 비례 대표 :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(전국구 의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비례대표 47명 중 30명(연동형*) + 17명(병립형**) → 준연동형 *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정당별 득표율에 정당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이 일치 → 30명 : <math>\langle (\text{국회의원 정수} \times \text{해당 정당 비례대표 선거득표율}) - \text{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인 수} \rangle</math> ** 17명 \times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</p>
임기	4년, 연임 가능
권리	불체포 특권, 면책 특권 → 국회의 자주성 및 국회 의원의 지속적 직무 수행 보장

예) 총의석수 12석 (지역구 6 + 비례대표 6), 소선거구제/다수대표제, 정당득표율은 각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정당득표율과 일치의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산출 방식

정당 \ 지역구	가	나	다	라	마	바	합계
A	800	500	100	500	300	200	2,400
B	500	300	100	300	500	400	2,100
C	300	400	700	100	100	700	2,300
D	300	100	200	300	900	100	1,900
E	100	200	400	300	200	100	1,300
합계	2,000	1,500	1,500	1,500	2,000	1,500	10,000

구분	A당	B당	C당	D당	E당	합계
㉠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	3	0	2	1	0	6
㉡ 총의석수(12) \times 정당투표	2.88	2.25	2.76	2.28	1.56	12

특표율						
㉔ 정당별 할당 의석수	3	2	3	2	2	12
㉕ 비례대표 의석수(㉔-㉑)	0	2	1	1	2	6
총의석수 (㉑ + ㉕)	3	2	3	2	2	12

㉔ (비례대표 각 정당별 할당 의석수) 각 정당득표율에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먼저 할당하고,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할당함 (계산방식)

나. 내부기구

구성 형태	단원제
주요 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의장 1인, 부의장 2인 ② 본회의 : 국회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주요 정책과 법률을 결정 ③ 위원회 :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·심의하는 합의체,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대응하는 방식(국방부 →국방위)으로 구성, 상임 위원회(상설)와 특별 위원회로 구성 ④ 교섭 단체 : 국회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 안건 협의,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인 이상의 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, 두 개 이상의 정당이 모여 20인 이상이 되면 교섭단체 구성 가능
회의	<p>정기회 : 매년 9월 1회(정기적), 예산심의의결 및 국정감사, 100일 이내(회기)</p> <p>임시회 : 대통령(기간/이유명시), 국회 재적 의원 1/4 이상의 요구, 30일 이내(회기)</p>
의결 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㉑ 일반의결정족수 : 재적 과반수 출석 + 출석 과반수 찬성 (법률 제/개정) “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” ㉒ 특별의결정족수 : 헌법이나 법률(국회법 등)에서 특별히 규정 - 거부권 행사에 의한 법률안 재의결 : 재적 과반수 출석 + 출석 2/3 찬성 (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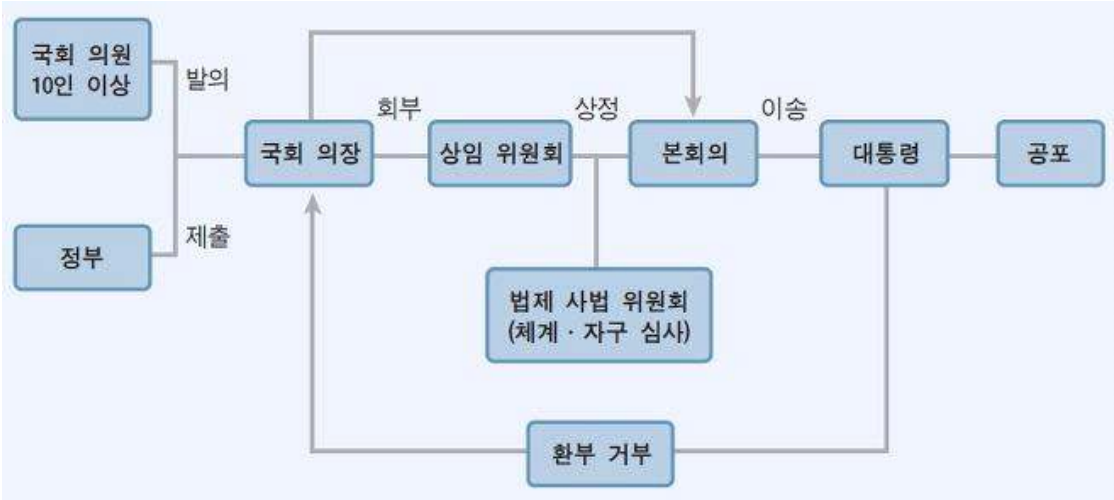
	<p>법 제54조 4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시국회소집요구 : 재적 1/4 이상의 찬성 (헌법 제 47조 1항) - 국무총리, 국무위원 해임 건의, 탄핵소추 : 재적 1/3(발의) + 재적과반수(찬성)(헌법제63조2항) - 대통령탄핵소추, 헌법개정안의결 : 재적과반(발의) + 재적2/3(찬성)(헌법제65조②,128조①, 130조①)
회의 원칙	<p>㉠ 의사공개의 원칙</p> <p>국회법 제75조(회의의 공개)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(動議)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㉡ 회기계속의 원칙</p> <p>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. 다만,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㉢ 일사부재의 원칙 (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 방지)</p> <p>국회법 제92조(일사부재의)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.</p>

2. 국회의 권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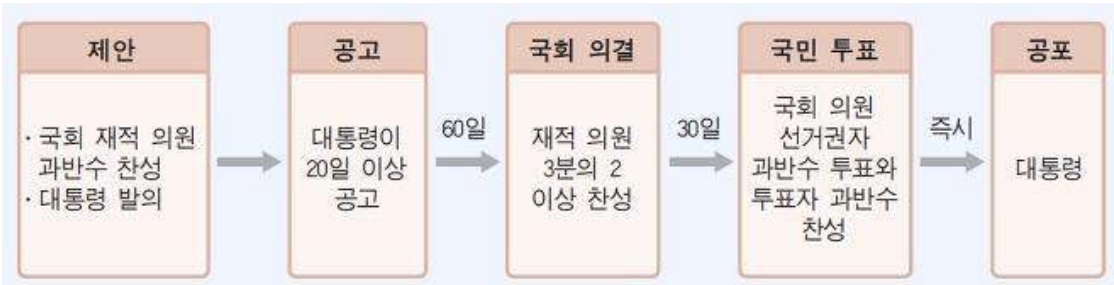
주요 권한	내용
입법에 관한 권한	헌법 개정안의 제출 및 의결권,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,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, 국회 규칙 제정권 등
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	국무총리·감사원장·대법원장·대법관·헌법 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, 헌법 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,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
재정에	

<p>관한 권한</p>	<p>예산안의 심의·확정권, 결산 심사권, 국채 모집과 예산 외의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, 예비비 설치 동의권 및 그 지출에 대한 승인권 등</p> <pre> 예산안 편성 제출 (정부) → 예산안 심의의결 (국회) → 예산집행 (정부) → 결산검사 (감사원) → 결산 심사 (국회) </pre>
<p>국정 감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</p>	<p>국정 감사 및 조사권, 국무총리·국무 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,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각종 동의 및 승인권, 국무총리·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, 탄핵 소추권, 계엄 해제 요구권 등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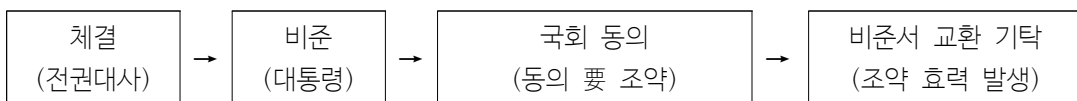
◇ 법률의 제·개정 절차



◇ 헌법 개정 절차



◇ 조약 체결 절차



◇ 국정감사권 / 국정조사권

국정감사	국정조사
매년 정기회 기간 중 20일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(법사위 → 법무부) 국정운영 전반적인 사항 감사	재적의원 1/4 요구시 실시(부정기적) 상임위원회 or 특별위원회 특정사안(예 옷로비 사건)에 대하여 조사 실시

◇ 탄핵소추권 /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

탄핵소추권 (대통령제)	해임건의권 (의원내각제)
대상 : 대통령, 고위직 공무원 사유 : 헌법 or 법률위반 절차 : 국회(탄핵소추) → 헌재(탄핵심판) 정족수 - 대통령 : 재적과반수 발의 → 재적2/3 찬성 - 기타 : 재적 1/3 발의 → 재적 과반 찬성	대상 : 국무총리, 국무위원 사유 : 사유 제한 없음 절차 : 국회(해임건의) → 대통령(해임결정, 기속x) 정족수 : 재적 1/3 발의 → 재적 과반수 찬성

◇ 기타 통제권

- 사전 동의권 : 선전포고, 국군의 해외파병, 일반사면
- 사후 승인권 : 긴급명령,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
- 계엄해제요구권,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회출석 요구 및 질문

3. 국회의원 특권

면책특권	불체포특권
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→ 내부 징계 可	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.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.